

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4. 11. 18 (화) 14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허원제 부위원장
김재홍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제5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○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6 의결사항

가. 2014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- (주)매일방송 (2014-54-194)

- 2014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(주)매일방송의 재승인 건에 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,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 확보방안 마련,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의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4-54-172)

- 방송분쟁해결제도 개선(직권조정제도 도입, 재정제도 신설, 방송유지·재개 명령 도입) 및 재산상황공표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,
 - 원안 중 방송법 제91조의2(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) 제1항을 '방송사업자·중계유선 방송사업자·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6조 제2항의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수급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(裁定)을 신청할 수 있다'로 수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'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이 제91조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'로 수정하여 의결함
- ※ 허원제 부위원장은 재정제도 신설을 반대하며 퇴장

7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다음 회의는 11월 27일(목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6:35)